문서번호	대법원-2013-두-20967		
결정유형	국승	세목	양도소득세
생산일자	2014. 01. 24.	귀속연도	2012
제목	양도당시 토지가 농지로 이용되거나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		
요지	토지는 건물의 대지 또는 폐자재 등의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일시적인 휴경상태로 있던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, 양도소득세 신고시 경작사실이 없다고 자인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토지에 대한 보상가액 산정당시 '전'으로 평가되었다 하더라도 양도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		
내용	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.		
관련법령			
상세내용			

사 건 대법원2013두20967(2018.01.24)
원고, 상고인 유**
피고, 피상고인 ○○세무서장
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.08.29.선고 2013누8167 판결
판 결 선 고 2014.01.24.

주 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이 유

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,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,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,

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